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2076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2.08.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4.18.

PLAY IN THE BOX

플레이인더박스

정보공개서

(주)헬로우아폴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헬로우아폴로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46, 2층(잠원동, 더스퀘어)

전화번호 : 070-8858-4500

FAX : 050-8901-11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 www.playinthebox.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4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6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8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헬로우 아폴로	플레이인더박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46, 2층(잠원동, 더스퀘어)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9.17.	2019.09.17.	진주영	070-8858-4500	050-8901-1177
	법인등록번호	110111-7233862	사업자등록번호		811-87-0144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진주영	플레이 인더박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46, 2층(잠원동, 더스퀘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주영	070-8858-4500	050-8901-117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신상우	플레이 인더박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46, 2층(잠원동, 더스퀘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주영	070-8858-4500	050-8901-117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귀하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플레이인더박스	
상 호	플레이인더박스 000점	
상표 (서비스표)	PLAY IN THE BOX	출원예정
	Play in the box	제 40-1669844호 (등록일 2020.12.07.)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194,125	1,584,506	-390,381	2,934,646	590,066	594,512
2023년	1,772,308	1,492,597	279,711	2,848,919	662,060	670,092
2024년	3,275,693	2,453,153	822,541	7,579,169	309,245	280,52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진주영	대표이사	2019.11.~현재	플레이인더박스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1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PLAY IN THE BOX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권리내용	등록일자 (출원일자)	등록번호 (출원번호)	소유자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예정	-	㈜헬로우아폴로	-
플레이인더박스	영업표지 사용	2020.12.07.	제40-1669856호	㈜헬로우아폴로	2030.12.07.
Play in the box		2020.12.07.	제40-1669844호	㈜헬로우아폴로	2030.12.0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사업 현황

1. [플레이인더박스] 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22년 5월 2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3월 1일)

2. [플레이인더박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헬로우아폴로	플레이 인더박스	진주영	2022.05.23~ 2024.06.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5층(여의도동, 파크원)
(주)헬로우아폴로	플레이 인더박스	진주영	2024.06.14~ 현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46, 2층(잠원동, 더스퀘어)

3.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플레이인더박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무인사진관 및 문구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 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6	15	1	26	19	7	17	10	7
서 울	7	6	1	12	7	5	5	2	3
부 산	1	1		1	1		1	1	
대 구	1	1		1	1				
인 천	1	1		1	1		2	1	1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4	4		7	6	1	5	3	2
강 원									
총 복				1		1	1		1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1	1		2	2		2	2	
경 남									
제 주	1	1		1	1		1	1	

5. 최근 3년간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	15	-	-	-	15
2023년	15	5	-	1	-	19
2024년	19	-	-	9	-	10

6. [플레이인더박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플레이인더박스]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0	51,236	3,174	162,805	12,523	7,498	1,178	
서울	2	해당없음						5개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개 미만
대구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개 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3	해당없음						5개 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2	해당없음						5개 미만
경남		해당없음						
제주	1	해당없음						5개 미만

☞ 상기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를 기초로 연평균 매출 추정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4	10	75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4년 [플레이인더박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73,979	73,979	-	
광고	(비공개)	(비공개)	73,979	73,979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인터넷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79	1588-2588
KB국민은행	강남타운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1588-9999

귀하는 위 예치기관 중 하나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의 이름을 찾아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플레이인더박스]는 2가지 형태의 매장으로 운영되므로 매장형태에 따라 최초가맹금 등 초기투자비용이 달라집니다.

기본형은 무인사진관(포토박스)만 운영하는 매장이며, 복합형은 무인사진관(포토박스) 및 문구점(쇼핑박스)을 결합한 매장입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기본형 6,600 복합형 7,7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표지사용 대가, 가맹점 모집 비용 소요
교육비	기본형 1,100 복합형 2,200		교육 미실시	개점전 교육비로 비용 소요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	-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발생금액 등	기본형, 복합형 동일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기본형	복합형
합 계	11,600	12,700
가 맹 비	5,500	5,500
교 육 비	1,100	2,2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 기본형 (무인사진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m²(1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평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설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26,400	2,64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설치전 계약취소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5,500	550			
포토박스(2대)	가맹본부	39,600	3,960			
서버설치비	가맹본부	1,430	143			
합 계		72,930	7,293			

나) 복합형 (무인사진관 + 문구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3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평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설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79,200	2,64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설치전 계약취소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7,700	257			
포토박스(5대)	가맹본부	99,000	3,300			
서버설치비	가맹본부	2,420	81			
합 계		188,320	6,278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개점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실측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당 삼십삼만원(₩330,000, VAT포함)을 지급(기본형 및 복합형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외부 개보수공사, 일부 설비공사, 철거공사 및 냉난방기, POS 등의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 귀하가 위의 예시와 다르게 포토박스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설전 신규교육 이수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 이해하고 책임을 다해 영업에 임할 수 있는 만19세 이상의 사업자
종업원 (사용인)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 브랜드 품위에 어울리는 품행이 단정하고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당사	무인사진촬영 매출액의 7.7% (VAT 포함) * 문구류 매출 제외 후 산출	익월 15일	반환 없음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당사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보수 교육	당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특별 교육	당사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당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20%		금전지급의무 또는 계약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수입금액에서 상품매출원가를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1년치로 환산함)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당사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레이인더박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 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플레이인더박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플레이인더박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포토박스 서비스, 당사가 제공하는 문구류 판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품 및 서비스는 가맹계약 체결시 안내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정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권장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 서면,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권장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무인사진관	플레이인더박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귀하의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표시합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소재 주소지 기준 반경 500m 이내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다만, 특수상권은 해당 상권내로 영업지역이 제한되어 500m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은 유동인구 및 동선을 고려하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반경 500m보다 좁게 영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특수상권 :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푸드코트,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아울렛,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장, 공항, 호텔 및 이와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 : 서울 강남, 논현, 종로, 명동, 광주 충장로,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등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플레이인더박스]**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4%	89.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서 조문
○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플레이인더박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제16조 제29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6조 제3항 (개점 점검 및 승인)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서비스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5조 제2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당사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 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 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플레이인더박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무인사진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플레이인더박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적으로 운영	월 26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가맹점사업자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자 지정

(4) 당사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플레이인더박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브랜드광고+가맹점모집광고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 음		
	가맹점 개별광고	없 음	100%		
개별 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겠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7조(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1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금일천백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제3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게 위약벌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
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가맹계약서상 구
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
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50일 내외	11~13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상담 및 희망지역 확인	D-47	-
사업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가맹금 예치	- 예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
가맹점개설 준비	- 가맹점의 임차 및 인테리어 시공 - 인허가 사항 등 처리 - 점포 설비 및 집기 구비	D-28~5	자율
교육 실시	- 점포 운영 전반 교육 실시	D-7~2	필수 이수사항
가맹점 영업개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개시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
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
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당사 요청시	매출증대,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가맹 사업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매출증대,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교육	회사소개, 포토박스 시스템 및 점포운영방법 등	실습교육 강 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 3일간	필수교육
양수교육	상 동	상 동	양수확정 후 1개월 이내	상 동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플레이인더박스]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수시교육	가맹점 운영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활성화 신시스템 소개 등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요 시	필수교육
보수교육	무인사진관 시스템 및 점포운영방법 등	개별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선택교육
특별교육	무인사진관 시스템 및 점포운영방법 등	개별교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최초교육	3일	기본형 : 1,100천원 복합형 : 2,200천원	최초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보수교육		협의 후 결정	
특별교육		협의 후 결정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관리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의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여의도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5층(여의도동, 파크원)
2	서울	메가박스 목동점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6층, 플레이인더박스 메가박스 목동점
3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코엑스몰 지하2층 일부)
4	인천	현대송도아울렛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B1
5	경기	메가박스 수원AK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6층 플레이인더박스 메가박스 수원ak점
6	경기	스타필드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7, 201동 217호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스타필드 수원 4층, 4194호
7	충북	현대충청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 현대백화점 충청점 U-PLEX관지하1층아크엔북내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8.3개월	여의도 직영점은 2021.03.01.영업시작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1,021,97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POS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6개월 미만은 제외, 6개월~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함)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플레이인더박스]의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헬로우아폴로 (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플레이인더박스]의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헬로우아폴로 (인)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 순회 점검표

○ 점포 점검사항

분 류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 의견
상품관리	1	상품 보관 및 재고상태		
	2	상품재고의 적정성		
	3	상품 진열 상태		
청결상태	4	매장 내부 청결상태		
	5	매장 외부 청결상태		
	6	매장 집기류 청결상태		
접객 및 교육상태	7	직원 복장상태		
	8	매뉴얼 숙지여부		
	9	고객 응대 방법		
회계관리	10	회계관리 적정성		
	11	보고자료 일치여부		

○ 가맹점주 건의사항

○ 담당자 조치사항

○ 점검 확인

점포명	방문일시	점검자	가맹점주(관리자) 확인
점		(인)	(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